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29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서미화・이병진・전진숙

오세희 • 정성호 • 박희승

이수진 · 김 윤 · 곽상언

양문석 • 한창민 • 전종덕

용혜인 의원(13인)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IQ)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을 말함.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구직이나 직업 활동 등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나,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도록 함(안 제4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과 보호자의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 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 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경계선지능인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자기결정권과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검사도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서비스 신청과 지원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의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관한 절차·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자립·취업·자녀양육·평생교육·의료를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계 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차.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25조 및 제26조).
- 카.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 (안 제28조).

타.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2조제1항).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경계선지능인의 권리) ①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경계선지능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및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인지능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 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고, 국민이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경계선지능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가정의 책임) 가정은 경계선지능인의 성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경계선지능인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 2.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6. 경계선지능인의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8.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 9.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지원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

- 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

- 제12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지능인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경계선지능인을 사실상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계선지능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계선지능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 보호자, 제25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② 법원은 경계선지능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경계선지능인 본인, 그 보호자, 검사 또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신청 이 있는 때에는 경계선지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경계선지능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라야 한다.

제4장 경계선지능인 진단 및 지원

제14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 개발을 지 원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며,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경계선지능인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이하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 능인 진단검사 결과를 해당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서비스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25조에 따른 경계선지능 인종합지원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의 실시와 검사결과의 통지 및 제25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연계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신청 등) ①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지원(이하 "지 원서비스"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계선지능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경계선지능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경계선 지능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 인별 지원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 제1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25조에 따른 경계선지 능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서비스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 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 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제 15조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계선지능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경계선지능인 또는 그 보호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경계선지능인과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연계) ① 경계선지능인종

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계선지능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연계하여야 한다.

- ②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서비스제공 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교육 및 활동·돌봄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이하 "경계선지능학생"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및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학습법 개발, 전문교사 양성, 일반교사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 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맞춤형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제2항에 따른 방과 후 활동·돌 봄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9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 · 생활 · 교육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지급
 -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4.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계선지능인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취업 및 고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그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 선지능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 소개, 공공일자리 지원,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21조(자녀양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

- 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설치,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설치,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23조(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 훈 련, 심리상담 등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 선지능인의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 제25조(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이하"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 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 제26조(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임무) ①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취업·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2.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 3. 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 4. 경계선지능인에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5.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7.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8.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 9. 지역 내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10.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11.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 1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
- 13.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경계선지능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채용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27조(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 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28조(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 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 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지도와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 여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서

- 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31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27조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벌칙) ①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서비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